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215547(본소), 2019가단226172(반소) 판결
[정산금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이종창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조소진

변론 종결 2020. 5. 12.

판결 선고 2020. 7.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851,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6,895,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7. 7. 18.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 E에 있는 F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 계약금액 9,933,781,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8. 12. 18. 위 발주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10,433,430,65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출자비율 35%)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고, 원고(출자비율 33%), C 주식회사(출자비율 32%)는 각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주기관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협정서에 따르면 손익의 배분 및 비용의 부담과 하자담보 책임 등은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도급 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1조 제5호에서 공동도급사별 출자비율을 확인하였고(원고 33%, 피고 35%), 제3조 제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도급상의 원고의 지분 33%에 대한 이익금으로 1% [= (기성 공급가액 - 간접공사비 ÷ 1) × 1%]를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산재보험및 고용보험은 각사 지분별로 신고 및 납부하고, 피고는 원고의 준공내역상 지분율만큼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8. 7.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을 완료하였는데,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담액을 정산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해야 할 돈은

3,148,859,252원이지만,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직불형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2,809,300,574원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제해야 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합계액은

62,060,533원(= 산재보험 50,635,164원 + 고용보험 11,425,369원)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지급액은 360,349,968원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는

9,708,982,650원이고, 기성대비 투입원가의 비율이 102.4%로 원래 예정되었던 것보다 2.4% 초과되었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본소청구 부분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담액을 정산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82,851,823원(= 직불하도급 대금 2,809,300,574원 +산재 · 고용보험료

62,060,533원 + 급여 등 지급액 360,349,968원 - 원고 부담액3,148,859,252원)을 더 지급한

것이 되므로,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는 정산금의 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반소청구 부분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출자비율 33%에 관한 부분을 모두 피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단지 1%의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내용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약정

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공사는 이 사건 협정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총 공사비 9,708,982,650원 중 원고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담액은 3,203,964,275원($= 9,708,982,650\text{원} \times 33\%$)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초과비율에 따른 76,895,142원($= 3,203,964,275\text{원} \times 2.4\%$)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기준으로 82,851,823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82,851,8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기준으로 한 본소청구는 부당하고, 나아가 원고 역시 이 사건 약정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거나 원고가 지급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한 후발주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내부의 부담관계를 정한 것을 두고 일괄하도급 또는 명의대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경기지역의 관급공사로서 경기지역 소재의 건설회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수급자격의 제한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원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발주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인 2019. 3. 12. 피고에게 준공정산에 관한 의견을 보내면서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산내용을 포함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19. 위 정산내용에 대한 반박없이 '자금사정으로 하도급부분의 대금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원가초과에 대하여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음에 정산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만 회신하여 피고도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 2명을 투입하기도 하는 등 단순한 명의대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엇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실제 기성대비 투입원가 비율(102.4%)을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반소청구에서 구하는 부담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붙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무효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에서 '현장 여건 및 상황의 변화 등 기타 공사추진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체 실행률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라고, 제8조 제1항에서 '이 약정서는 공동도급사간 체결한 어떠한 협약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각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정산에 우선함을 알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행률을 99%에 맞추어 원고에게 1% 이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피고가 그 손해를 책임지고, 실행률을 99%보다 낮추는 경우에는 피고가 추가적인 이익을 보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택원

1) 간접공사비 II: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 안전, 환경, 하도급대금/기계보증수수료

2) 위 각 돈의 액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약정의 유효여부,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위각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한다.